



# 삼척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66호 2021. 4. 9.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56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5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5
- 삼척시 고시 제58호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8

##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444호 재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 11
- 삼척시 공고 제445호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
- 삼척시 공고 제45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21
- 삼척시 공고 제459호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  
공고 ----- 24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1 - 56호

##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라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업자 및 낙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5일

### 삼 척 시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라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은 낙시어선업자(이하 “낙시어선업자”라 한다), 선원 및 낙시어선의 이용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영업시간)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낙시어선(이하 낙시어선” 이라한다)의 영업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으로 한다.

제4조(영업구역) 낙시어선의 영업구역은 강원도 관할수역 해안선으로부터 연안 12마일이내 수역으로 한다. 단, 선외기를 설치한 낙시어선은 연안 7마일이내 수역으로 한다.

제5조(안전운항 준수사항 등) ①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제한 및 통제구역으로 승객을 안내하지 말아야 한다.
2.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갯바위 및 간출암 등에 승객을 하선시키는 행위를 금한다.
3.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승객의 위급한 상황 및 해상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명구조 활동 등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출항 전 항해·통신·기관·추진 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5. 출항 전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 전원에게 영업 종료 시까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출항 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6. 낚시어선업자·선원은 승선하려는 낚시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자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7. 낚시어선업자등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입·출항시 낚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낚시어선업자는 술에 취한 사람, 정신질환자 및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미만 의 사람 등 승선에 부적합한 사람을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9. 낚시어선업자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의 어선위치발신 장치(V-PASS, AIS 등) 또는 통화가 가능한 무전기,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를 영업 중인 낚시어선에 설치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중단하여 연락이 두절되면 아니 된다.
10.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낚시어선의 승객의 안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삼척시장 또는 출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한다.
2.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3.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안전운항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금한다.
4. 불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바다에 유류, 분뇨, 폐기물 등을 투기하는 행위를 금한다.
6. 낚시어선에 승선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 전원은 안전 확보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7.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 '승선자 명부'작성시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승객에게 정확한 작성을 요구하고, 허위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8. 낚시승객은 선상에서 낚시 중 기상악화 예견 등으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안전대피를 위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 9.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선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승선자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신분증제시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타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를 하고자 승선하는 승객에 대하여 출항 전에 준수사항을 교육시킨 후 출항 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정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속력제한) ① 낚시어선업자는 항내 입·출항시, 양식장 주변 또는 일출 전·일몰 후 통항할 때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계를 제한받는 때에는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낚시관리육성법」 시행령 제18조2의 운항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요청) 삼척시장은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의무를 위반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삼척시 고시 제2016-138호 (2016.11.04.)는 폐지한다.

삼척시 고시 제2021 - 57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 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9.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363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4. 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73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363	20210409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 (미로,노곡,근덕) 연결구간시종점지역 명칭활용(미로,근덕)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920-40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46	20210409	기존건물	20090626	행정구역명 (옥원,이천) 복합활용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47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길 248-10	20210409	신축건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1088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4길 826	20210409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일련번호방식)
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920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3길 94	20210409	가설건축물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옥원이천로분기)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5건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36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옥원이천로 46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73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363	20210409	가설건축물	20090626	20090626	행정구역(미로, 노곡, 근덕)연계구간 시종점지역명칭활동(미로, 근덕)	원덕 호산 게이트볼장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920-40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46	20210409	기준건물	20090626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 이천)복합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47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길 248-10	20210409	신축건물	20090626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1088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4길 826	20210409	가설건축물	20090626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원리번호방식)		
부여 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920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3길 94	20210409	가설건축물	20090626	20090626	원리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 (옥원이천로분기)		

삼척시 고시 제2021-58호

#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근덕면 광태리 124-1번지 및 원덕읍 갈남리 99-2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2개소(도로, 항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9일

삼척시장

### 가. 계획취지

- 「국토계획법」 제2항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조서

#### 1) 교통시설

#####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국7 구B	12 ~25	보조 간선 도로	22,301	임원도시 지역경계 원덕읍 임원리 산295-3	근덕도시 지역경계 근덕면 교가리 244-4	일반 도로		2010. 7.16. (삼척시고시 제48호)	최근고시: 2018. 4.13. (삼척고 49)
변경	중로	3	국7 구B	12 ~25	보조 간선 도로	22,301	임원도시 지역경계 원덕읍 임원리 산295-3	근덕도시 지역경계 근덕면 교가리 244-4	일반 도로			삼척로 (舊국도7호선)



###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3-국7구B호선	중로3-국7구B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구간(근덕면 광태리 115-4번지, 124-1번지 일원) 선형 변경</li> <li>「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계복원측량 결과 반영</li> <li>미세하게 지측되는 국·공유지 경계 확인(철도부지 활용 민원 관련)</li> </ul>

### 나) 향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갈남항	3종 어항	원덕읍 갈남리 99-20 일원	12,941	-	12,941	2019. 6.21. (강원도고시 제268호)	계획 관리지역

### - 향만 조성계획 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원덕읍 갈남리	12,941	-	12,941	2019. 6.21.	
변경 가.		기본시설		4,781	감 316	4,465		
변경 1)		방파제	99-18 일원	2,777	감 316	2,461		
기정 2)		물양장	99-23 일원	2,004	-	2,004		
기정 나.		기능시설		7,138	-	7,138		
기정 1)		부지 내 도로	99-21 일원	3,689	-	3,689		
기정 2)		주차장	99-25 일원	992	-	992		
기정 3)		어구 건조·수리장	99-20 일원	1,424	-	1,424		
기정 4)		수산물 유통시설	99-25 일원	1,033	-	1,033		
변경 다.		어항 편익시설		1,022	증 316	1,338		
변경 1)		관광객 휴게시설	99-18 일원, 공유수면	1,022	증 316	1,338		

### ■ 향만 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가. 1)	방파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 축소</li> <li>- 2,777㎡ → 2,461㎡ (감 3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갈남마을 체험관광 육성을 위하여 편익시설 정비(매표소 신축, 화장실·샤워장 리모델링)가 가능한 세부시설로 변경</li> </ul>
다. 1)	관광객 휴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 증가</li> <li>- 1,022㎡ → 1,338㎡ (증 316㎡)</li> </ul>	

다.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도 및 지형도면: 별도 첨부

라. 본 고시와 관계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 공고 제2021-444호

## 재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삼척시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등록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6일

### 삼척시장

#### 1. 등록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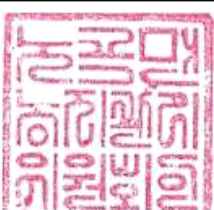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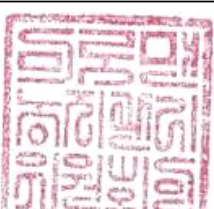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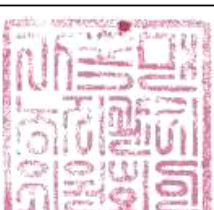
가. 분실로 인한 폐기 및 재등록

나. 삼척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로 인한 폐기

#### 2. 등록 연월일 : 2021. 4. 6.

####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인명	규격(cm)	인영	등록사유	비고
폐기	삼척시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인	1.8×1.8 (정방형)		분실로 인한 폐기	
재등록	삼척시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인	1.8×1.8 (정방형)		폐기 후 재등록	
폐기	도계읍 농지관리위원회인	3.6×3.6 (정방형)		조례 폐지	

구분	공인명	규격(cm)	인영	등록사유	비고
폐기	원덕읍 농지관리위원회인	3.6×3.6 (정방형)		조례 폐지	
폐기	근덕면 농지관리위원회인	3.6×3.6 (정방형)		~	
폐기	하장면 농지관리위원회인	3.6×3.6 (정방형)		~	
폐기	노곡면 농지관리위원회인	3.6×3.6 (정방형)		~	
폐기	미로면 농지관리위원회인	3.6×3.6 (정방형)		~	
폐기	신기면 농지관리위원회인	3.6×3.6 (정방형)		~	
폐기	가곡면 농지관리위원회인	3.6×3.6 (정방형)		~	

## 삼척시 공고 제2021 - 445호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09일

삼척시장

##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도시가스시설 설치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신설(안 제2조제3호, 제7호, 제8호)
- 일반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에 관한 용어 신설
- 나.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 지원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 범위 확대 및 인입배관분담금의 지원 추가(안 제5조)
- 현행: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50만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최고 200만원

- 변경: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0만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최고 300만원
- 다. 그 밖에 일부 미비사항 정비

###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경제과
  - 전화 : 033-570-3358      ○ FAX : 033-570-3140
  - 전자우편 : dizy@korea.kr

###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일반시설분담금”이란 공통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에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강원도지사”로 한다.

제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지원대상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단서 중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을 “일반시설분담금 전액을 포함하여 세대당 최고 300만원”으로 한다.

제6조 중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관 계 법 령

###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공고 제445호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 례 안 (시행규칙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 삼척시 공고 제2021-456호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21.03.08. ~ 2021.03.22. (15일간)
3. 말소(예정)일자 : 2021.03.23.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심상○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17	
	목조/스레이트 (1층:63.23㎡ 단독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3. 08.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

삼척시 공고 제2021 - 459 호

###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

1. 삼척시에서 시행하는 시도13호선 자원~우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2일

삼척시장

####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도로구역 결정일로부터 50개월

사업명	위치	편입면적	사업시행자 명칭(성명) 및 주소
자원~우지간 도로개설공사	삼척시 자원동 ~ 삼척시 우지동	146,559m <sup>2</sup>	삼척시장/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 2.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공람장소
2021년 4월 12일 ~ 4월 27일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삼척시청 건설과/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2층)

※ 열람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도로구역의 위치도, 도로계획평면도, 도면

####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1. 4. 12. ~ 2021. 4. 27.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 타 : 본 열람내용은 향후 분할측량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건설과 (☎ 033-570-34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